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62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7. 14.

발 의 자 : 박완주 · 조배숙 · 윤후덕
위성곤 · 기동민 · 박남춘
김영진 · 도종환 · 김현권
권칠승 · 이개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이상기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인하여 더욱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을 위하여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.

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, 기본계획 수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함.

또한,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, 현행법 제27조 및 제3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같

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률 증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).
- 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·고령사회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22조의2 신설).
- 다. 국가는 농어업인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음(안 제30조의2 신설).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토대로”를 “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

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2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우선 시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0조의2(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지원) 국가는 농어업인이 「노인장기

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<u>토대로</u>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• 2. (생 략) 3. <u>재원 조달 방법</u></p> <p>4. • 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<u>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----- ----- --.</u>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•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</u></p> <p>4. •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8조(추진계획 등의 수립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</p>	<p>제8조(추진계획 등의 수립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----- ----- ----- -----</u></p>

<p>책의 추진계획(이하 “추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 략)</p> <p>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기본계획·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·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<u>보건복지부장관</u>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2조의2(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우선 시행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0조의2(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지원) 국가는 농어업인이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같은 법 제40조에</p>

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
부부담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